

법무법인(유)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[수신거부](#)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특례상장 확대 및 외국기업 관리 강화

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(시행 2019. 7. 1.)을 통해 우수 기술기업 상장활성화 및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확대하고, 업종별 상장·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,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화 하였습니다.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1 기술특례상장 활성화

코스닥시장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장할 수 있는 대상(이하 “기술 평가특례”)을 기존에는 국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 이 아닌 기업 및 외국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. 구체적으로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% 이상인 중소기업이 아닌 국내법인(이하 “스케일업 기업”) 및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<sup>\*</sup>에 설립된 외국기업(사업자회사 포함)이 일정요건<sup>\*\*</sup>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평가특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그리고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대상(이하 “성장성특례”)도 기존 국내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또한,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을 경우(AA & A 이상)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심사를 면제 하였으며, 전문가 회의 절차도 면제하였습니다.

#### 기술특례상장 대상 확대 주요 개정내용

| 상장방식   | 개정 전 대상 | 개정 후 대상   |
|--------|---------|---|
| 기술평가특례 | 중소기업    | 국내법인(중소기업, 스케일업 기업),<br>일정요건 충족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 설립 외국기업 |
| 성장성특례  | 중소기업    | 국내법인(중소기업, 스케일업 기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미국, 영국, 독일, 캐나다, 일본, 홍콩, 호주, 싱가포르, 프랑스 등 유로넥스트 소재국

\*\* ① 기술평가등급이 모두 A 이상(A & A 이상), ②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내 외국기업 주선실적이 있고 부실기업(상장 후 2년 내 관리종목지정 등) 주선실적은 없을 것, ③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한도 상향[max(5%, 25억 원 → 50억 원)]

### 2 업종별 차별화된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

코스닥시장은 상장심사 시 적용되는 질적 심사기준 중 기업계속성 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 하지 못하고 범용화되어 있어, 아직 관련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4차산업 및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계속성 심사항목 중 일부를 혁신성 요건을 중심으로 개선하여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.

#### 기업계속성 심사항목 주요 개정내용

| 개정 전(⇒일부 업종구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후(⇒일부 업종 차별화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상장방식           | 심사항목                     | 상장방식          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| 심사항목  |
| 기술성장 기업        | 영업상황/기술성·사업성/ 성장성/기타경영환경 | 기술성장 기업          | 바이오 업종 <sup>(1)</sup> | 기술성(원천기술보유, R&D역량, 사업성 등)/ 영업상황/성장성/기타경영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4차 산업 <sup>(2)</sup>  | 혁신성(사업·기술의 혁신성 등)/ 기술성(기술 실현가능성, 상용화가능성 등)/ 성장성(성장잠재력, 사업확장성 등)/ 기타경영환경 |
| 이익 미실현 기업      | 영업상황/재무상황/ 성장성/기타경영환경    | 이익 미실현 기업        | 4차 산업                 | 혁신성(사업·기술의 혁신성 등)/ 성장성(성장잠재력, 사업확장성 등)/ 재무상황/기타경영환경                     |

(1)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코드(KS J 1009)에 따른 바이오산업 또는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

(2) 중소벤처기업부가 분류한 4차산업 전략분야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

또한, 장기간 연구개발 및 높은 매출변동성을 보이는 제약·바이오기업의 산업특성을 감안하여, 기술성장기업(기술평가특례, 성장성특례) 요건으로 상장한 제약·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적용되는 매출액 미달(30억 원 미만) 관련 관리종목지정 등의 시장조치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었습니다. 즉, 일시적 매출 약화<sup>\*</sup>, 연구개발 우수기업(제약산업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 기업) 및 시장평가 우수기업(최근 사업연도 일평균시가총액 4천억 원 이상)에 대해 매출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지정을 면제하였습니다.

#### 매출액 미달 관련 업종별 관리종목지정 개선

| 구분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개정 전    |       | 개정 후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상장 후 5년 | 5년 이후 | 상장 후 5년 | 5년 이후         |
| 기술 성장 기업 | 제약·바이오 기업 | 연구개발·시장평가 우수 | 면제      | 지정    | 면제      | 면제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| 그외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| 일시적 매출 약화시 면제 |
|          | 그외        | 지정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이익미실현기업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지정      |               |
| 그외 기업    |           | 지정           | 지정      | 지정    | 지정      |               |

\* (일시적 매출 약화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 원이상인 경우. 단,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시는 제외

### 3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및 관리 강화

코스닥시장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상장 외국기업 및 이미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.

외국기업 신규상장의 경우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 이외 국가에 설립된 외국기업은 ① 역외지주 방식으로 상장하는 경우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<sup>\*</sup> 방식<sup>\*\*</sup>으로만 상장을 허용하였으며(국내 법 적용), ② 직접 상장하는 경우에는 국내·외 대형회계법인(Big4)으로만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.

#### 외국기업(1차상장) 설립지국별 감사인 자격 개정 주요내용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개정 전  | 개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립지                 | 상장방식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 국가      | 직상장    | 국내 회계법인<br>(회원사 30개국&회계사 2천 명 이상인<br>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 체결 등)           | (개정전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역외지주상장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 이외 국가 | 직상장    | 외국 대형회계법인(Big4)<br>(회원사 100개국&회계사 10만 명 이상인<br>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 체결 등) | 국내 대형회계법인(Big4)<br>외국 대형회계법인(Big4) |
|                     | 역외지주상장 |   |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만 허용(⇒ 국내법 적용)           |

이미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시 외감법 규제를 준용<sup>\*\*</sup>하고, 내부 회계 관리제도도 국내기업 수준으로 강화(순차적 외부감사 의무화)<sup>\*\*\*</sup> 하였습니다.

또한, 외국기업 신규상장 시 국내사무소 설치 및 한국인 사외이사 1인 이상 선임의무를 상장 계약서에 반영하고(1차 상장만 해당), 대표이사가 관계 법규 준수 등을 약속하는 “대표이사의 무이행 약속서”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.

금번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,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시장 국제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<sup>\*</sup>(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) 외국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국내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

<sup>\*\*</sup>(감사인 선임 및 해임)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외부감사인 선임(연속 3개사업연도 동일 감사인), 외감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해임사유(감사인의 기밀누설, 부당요구 등) 발생 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해임 및 해임 후 2개월 내 재선임

<sup>\*\*\*</sup>(감사의무화 일정) 자산 2조 원 이상(FY2019), 5천억 원 이상(FY2020), 1천억 원 이상(FY2022), 모두적용(FY2023)

### 담당 변호사/전문가

|  |  |  |
|--|--|--|
| 이행규 변호사<br>T. 02-6200-1744<br>E. hglee@jipyong.com | 김병률 고문<br>T. 02-6200-1824<br>E. briankim@jipyong.com | 장영은 전문위원<br>T. 02-6200-1859<br>E. yejang@jipyong.com |
|--|--|--|